

‘농·업·직·불·제·도’

어떤 것이 있나?

최근 쌀직불제가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제도상의 허점도 있지만 경자유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쌀직불제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한 지주가 받아간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WTO체제하에 허용된 농가의 생산비와 소득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농업직불제도의 특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쌀소득직불제는 쌀소득등보전에 관한 법규정에 의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쌀값하락을 방지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지불금은 고정지불금과 변동지불금으로 나뉘고, 고정지불금은 ha당 60~70만원을 지불하며 매년 10월 기준으로 농가에 지급한다. 변동지불금은 정부가 목표가격(170,083원/80kg, 1가마)을 정하고 산지평균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85%를 정부가 이듬해 3월에 보전해준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직불제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강조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제도역시 농업의 환경보전, 식량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WTO 협정 이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

보조기준은 논의 경우 ha당 39만2천원(저농약 실천농가 21만7천원), 밭의 경우 ha당 79만4천원(저농약 실천농가 52만4천원)을 지급한다.

경영이양직불제

농촌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해 63세 이상 69세 이하 벼농사를 짓는 농가로 한국농촌공사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할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 매도시는 만 70세까지 ha당 기준으로 매월24만1천원을 지급하고 (연289만6천원/ha) 임대이양 시는 ha당 297만7천원을 1회 일시지급하게 된다. 지급한도는 농업진흥지역 안 논으로 2ha까지 한정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주관한다.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 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 즉 해바라기,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메밀, 목화 등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70만원을 소득손실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전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시범운영 되어온 이 사업은 800ha로 늘어나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에 엄청난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직불제의 요건과 지급단가, 지급기준이 현실에 부합치 못하고 잘못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농지가 생산공간이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국민적 인식이 문제일 수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검토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가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출처 농촌여성신문 윤병두 기자